

# 2019년도 제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## I. 회의 개요

- 일 시 : 2019. 6. 17.(월요일), 14:00
- 장 소 :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
-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
  - 심의위원 : 강상욱, 백대용, 손승우(분과위원장)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1.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..... 분과위원장

2. 전차(제2019-86회)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..... 분과위원

3. 안건상정 ..... 분과위원장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보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·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4. 폐회선언 ..... 분과위원장

## II. 회의내용 및 결과

### 1. 의결안건

-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,000건(안건번호 제2019-49995호~51241호)
  - 회의결과: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사진 게시물 1개 안건(제2019-49995호)은 시정권고 제도가 온라인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므로 부결하기로 의결함  
그 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기로 의결함

### Ⅲ. 회의 의사록

#### 1. 개회선언

- 손승우 분과위원장 :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

#### 2. 전차(제2019-86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

- 손승우 분과위원장 :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4쪽 저작물명, 4~5쪽 특정 밴드 명, 회사 명,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
- A 위원 :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
- B 위원 : 의견에 동의함
- C 위원 : 의견에 동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복제·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록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
- C 위원 : 복제·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록은 비공개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

- A 위원 : 같은 생각임
- B 위원 : 같은 생각임
- 손승우 분과위원장 :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, 저작물명, 특정 밴드 명, 회사명은 비공개 하고, 정보제공청구 심의는 「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며,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

### 3. 안건상정

#### o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- 성원영 전문위원 :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-49995호~51241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2,000건임  
안건번호 제2019-49995호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것으로,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 사진 등을 게시한 사안임  
(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)심의대상 게시물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해외에서 직접 배송하는 상품이며, 게시자는 '○○○○'로 해당 제품의 국내 공식총판회사인 '☆☆☆☆☆'와 비슷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정식 수입 사업자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음  
부정경쟁방지법, 상표법 등 저작권법에서 심의위원회에 부여한 권한을 벗어나는 쟁점에 관한 검토보고는 하지 않겠음  
(심의대상 게시물과 민원인 홈페이지 이미지 비교 사진을 제시주면서) 민원인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제품설명 정보, 제품 사진 부분

이 동일함

우리 심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내 제품 광고 사진 또는 제품 사용 관련 이미지들의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,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심의위원회에서 제품판매 게시물 내 사진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논의를 한 바 있음

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양당사자 대립구조가 아니므로 저작물성 인정 여부 및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사안에서 자신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

나아가 본 건과 같은 사안에서는 침해자가 비교적 명확하므로 권리주장자가 직접 제품 판매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침해 중단을 요구하거나 게시자를 상대로 민·형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권리구제에 효과적 일 것으로 사료됨

- 손승우 분과위원장 :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-49995호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사진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
- B 위원 :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함
- A 위원 : 이견 없이 부결 의견임
- C 위원 : 안건번호 2019-49995호는 시정권고 제도가 온라인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본래 취지에 비추어 불 때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여 만장일치로 부결하기로 의결함

- 성원영 전문위원 : 안전번호 제2019-49996호~50027호는 보호원이 모바일 웹하드를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,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상 저작물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 
불법복제물의 복제·전송자가 PC버전 웹하드에 영상물 파일을 업로드 하면 모바일버전 웹하드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인코딩(encoding)을 거친 후 모바일버전 웹하드에 재업로드 됨  
즉 업로더가 올린 파일은 1개이지만,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된 파일은 2개가 됨  
PC버전 웹하드와 모바일버전의 웹하드의 저장 위치 및 접속 경로가 상이하야 PC버전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이 삭제되더라도 모바일 버전 웹하드에서는 삭제되지 않음
- 손승우 분과위원장 :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19-49996호~50027호 모바일 웹하드의 영상저작물 불법복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
- C 위원 : 모바일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해 질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(보호원이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)심의 대상 게시물에는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는 실시간 보기 버튼과 다운로드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음
- C 위원 : 충분한 답변이 되었음
- A 위원 : 저작권보호원에서 모바일 웹하드 시정권고 이력에 대해 질의

함

- 성원영 전문위원 : 과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웹하드에 대해 시정권고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 
저작권보호원은 2019. 6. 13. 개최된 제1분과위원회(제2019-91회) 의결 이후 시정권고를 하고 있음
- A 위원 : 모바일 웹하드 시정권고에 대해 적극 찬성 의견이며, 최근 불법복제물 유통은 PC버전보다 모바일버전으로 확산 되고 있음
- C 위원 : 최근 불법복제물 이용은 모바일에서 많은 것으로 사료됨
- B 위원 : 보호원에서 모바일 웹하드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질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모바일 뷰어를 PC에서 활용하여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
- C 위원 : 모바일 웹하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임
- A 위원 : 의견에 동의함
- B 위원 : 같은 생각임
- 손승우 분과위원장 : 안전번호 2019-49996호~50027호는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만장일치로 가결함

- 성원영 전문위원 : (불법복제물 제공화면, 파일 다운로드 화면,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19-50028호~51241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, 프로그램, 게임, 만화, 어문, 영상물 등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
- C 위원 : 단순 불법복제물이므로 이의 없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
- B 위원 : 의견에 동의함
- A 위원 : 이견 없음
- 손승우 분과위원장 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-50028호~51241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,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

(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“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-49995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, 안전번호 제2019-49996호~51241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.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”



#### 4. 폐회 선언

-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

2019년 제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 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6. 24.

분과위원장 손승우

위원 강상욱

위원 백대용